

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

[illegible]

비고

1. “거대 형태”란은 매매, 교환, 증여, 판결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“부동산 종류”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, 주택, 토지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“적정 여부”란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“과태료 부과대상”란은 ○, ×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